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48호 2023. 12. 20. (수)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97호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98호 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7
- 정선군 조례 제2999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10
- 정선군 조례 제3000호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16
- 정선군 조례 제3001호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20
- 정선군 조례 제3002호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22
- 정선군 조례 제3003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27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95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31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109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35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1427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37
- 정선군 공고 제2023-148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40
- 정선군 공고 제2023-148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52

# 조 례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4.)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15.)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7호

##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84조에 따른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운영”을 “제56조에 따라 정선군의회회의 회기와 운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간 총 회의일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회기운영)”을 “(정례회의 회기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로, “2회로 나누어 개최하고”를 “2회 개최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안전심의)”를 “(정례회의 안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라 결산안 승인 및 기타”를 “따른 결산 심의 및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

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84조에 따른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56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회기와 운영 ---- ----- ----- -----.</p>
<p>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p>	<p>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p>
<p>제3조(회기운영) ①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p> <p>②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p>	<p>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2회 개최하되----- -----.</p>
<p>제4조(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p>	<p>&lt;삭 제&gt;</p> <p>제4조(정례회 집회일) -----</p>

현 행	개 정 안
<p>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u>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 날에</u> 집회한다.</p> <p>1. 2. (생략)</p> <p>제5조(안전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u>따라</u>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p> <p>&lt;단서신설 2009.06.16.&gt;</p> <p>③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p> <p>&lt;신설&gt;</p>	<p>----- ----- . <u>그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u> 집회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제5조(정례회의 안전처리) ①----- ----- <u>따른</u> 결산심의 및 그 밖에 ----- ----- .</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제6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전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p> <p>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p>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준용규정)</u> 이 조례에 규정 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정선군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p>	<p><u>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u> <u>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 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 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 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 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u></p> <p><u>제7조(준용규정)</u> ----- ----- <u>필요</u> <u>한</u> ----- -----.</p>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소집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선군의회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의회 연간 회의(본회의 및 임시회) 일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

나.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전처리 규정(안 제6조)

1) 임시회 때 회기 15일 이내 운영

2)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 처리

3)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음

다. 정례회 회기 운영 등 자구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제5조, 안 제7조)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4.)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8호

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정선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 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 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군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가.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
- 나.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우리군 위상 제고 및 효율적 군정 홍보 추진

□ 주요내용

- 가. 홍보대사 임무(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 규정
- 나. 홍보대사 위·해촉(안 제3조 ~ 제4조)
  - 1) 홍보대사의 위촉요건 및 임기 규정
  - 2) 홍보대사의 해촉사유 규정
- 다.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안 제6조)
  - 1)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 수행 시 필요한 의전 및 예우 규정
  -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활동비 등 보상 규정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4.)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99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을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을 “권한남용”으로 한다.

제2조(「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의 개정) 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u>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 <u>같은 법 제40조제7항</u>----- ----- -----.</p>
<p>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p>	<p>제17조(정치적 중립) ----- ----- 「특별법」 제40조제5항----- ----- ----- -----.</p>



현 행	개 정 안
<p>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 략)</p> <p>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u>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u>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p> <p>4. ~ 8.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 -----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물품관리만 해당한다)----- ----- -----</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3조(「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대상사업) <u>법 제16조제 3항</u>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 략)</p>	<p>제5조(지원대상사업) <u>법 제16조제 2항</u>----- ----- -----.</p> <p>1. ~ 7. (현행과 같음)</p>

제4조(「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u>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u>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도로법</u>」 제35조 및 제91조----- ----- ----- ----- -----.</p>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의 조문, 내용, 제명 등의 변경에 따른 미반영 사항 개정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4.)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0호

###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정선군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 가. 미성년자
  -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비용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 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사망원인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제안이유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마련 등 조례 제정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6조)

마. 업무위탁(안 제7조)

바. 점검 및 비용환수(안 제8조 ~ 제9조)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4.)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1호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정선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22.1 1.15.), 시행( '23.05.16.)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 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1) 세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 2) 세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 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4.)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2호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선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선군 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4.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5. 법 제23조의4에 따라 군에서 수립한 화학사고대응계획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통지) 군수는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정선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정선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 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2. 환경·안전·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5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선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나.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통지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사항 등 규정(안 제8조~제13조)
- 마. 화학물질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4.) 및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3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3조의4의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을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 고용하도록” 을 “고용하도록” 으로 한다.

제4조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을 “각종”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따라 -----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군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고용) ① ----- ----- 고용하도록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각종 ----- ----- ----- -----.</p>
<p>제5조(모범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p>	<p>제5조(모범 건설인 선정) ① ----- -----</p>

현 행	개 정 안
<p>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u>제6조의</u> <u>규정에 의한</u> 정선군지역건설산 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 다.</p> <p>②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모범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 략)</p>	<p>----- <u>제6조에 따른</u> - ----- ----- -----.</p> <p>② <u>제1항에 따른</u> ----- ----- -----.</p> <p>1. 2.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차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경쟁 촉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24년(`23년 실적) 합동평가 집중관리지표에 해당하므로 개정하여 실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과도한 경쟁 제한 조항 내용 완화
  - 1)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 문구에서 “우선” 삭제(안 제3조의4 제1항)
  - 2)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문구에서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삭제(안 제4조)
- 나. 일본어 투 표현 변경

# 규 칙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1. 10.)에서 의결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95호

##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정선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정선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2조(「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u>7조의3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u>법 제16조제3항</u>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가. ~ 라. (생략)</p> <p>② <u>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u>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 경우, 영업소 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p> <p>1. ~ 6. (생략)</p> <p>③ ~ ⑤ (생략)</p>	<p><u>항</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법 제16조제2항</u>-----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②----- <u>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령의 조문, 내용, 제명 등의 변경에 따른 미반영 사항 개정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109호

##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업비 : 2,514,271천원
  - 국비 (1,774,000천원), 지방비 (661,000천원), 자부담 (79,271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시행계획 변경내용 별첨)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7.8리 안경다리마을 일원
  - 기반시설정비
    - 배수로정비, 안전확보, 문화복지공간 조성, 조동7리 경로당 지붕개선, 커뮤니티센터 조성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개선

- 안길정비, 샘터정비, 재래식 공동화장실 정비, 노후담장 정비

- 역량강화

-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5.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6.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1427호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8일

정 선 군 수

### 1. 계획의 개요

- 공람목적 : 고한12리 하이원스키장 진입로 및 고한17리 일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3,621	증) 661	4,282	강원도고시 제207호 (98.10.15)	-
변경	5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1,723	증) 1,006	2,729	“	-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 12. 8. ~ 2023. 12. 22.(계재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도서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4.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입토지조서(고한12리\_주차장 4)

연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고한읍 고한리	120-5	주차장	2,894	2,349	정선군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2	“	120-23	대	867	349	정선군	“				
3	“	120-48	주차장	97	97	정선군	“				
4	“	121-19	대	1,969	1,213	정선군	“				
5	“	124-9	전	119	119	정선군	“				
6	“	산1-93	임야	191	155	정선군	“				
계				6,137	4,282						

■ 편입토지조서(고한17리\_주차장 5)

연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고한읍 고한리	104-3	주차장	1,880	551	정선군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2	“	104-52	대	353	250	정선군	“				
3	“	104-55	도로	49	49	정선군	“				
4	“	104-60	대	936	850	정선군	“				
5	“	104-63	도로	168	144	정선군	“				
6	“	104-68	대	617	345	정선군	“				
7	“	산1-129	임야	2,508	362	정선군	“				
8	“	산1-130	철도	2,293	178	국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6로 11				
계				8,804	2,729						

정선군 공고 제2023-148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공포(’22.12.27.)·시행(’23.6.28.)됨에 따라,
- 나. 우리 군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만’ 으로 규정한 자치법규의 조문에서 ‘만’ 표현 일괄 삭제  
 →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만 ○세’ 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정선군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30세 이상 만50세”를 “30세 이상 50세”로 한다.

제4조(「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5조(「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6조(「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만 12세”를 각각 “12세”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만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만 60세” 를 “60세” 로 한다.

제9조(「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만 18세” 를 “18세” 로, “만 45세” 를 “45세” 로 한다.

제10조(「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만7세” 를 “7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만13세” 를 “13세”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만19세” 를 “19세” 로 한다.

제11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만 4세” 를 “4세” 로,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만65세” 를 “65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미혼자”라 함은 법령상 배우자가 없으며 <u>만30세 이상 만50세 미만</u> 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2. ----- ----- <u>30세 이상 50세</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u>만 18세</u> 이하인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	6. ----- ----- <u>18세</u> -----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5조(「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u>만18세</u>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제2조(지원 대상) ----- ----- ----- ----- ----- <u>18세</u> ----- ----- -----</p> <p>1. ~ 8. (현행과 같음)</p>

제6조(「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승차인원) 케이블카 1대당 승차정원은 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승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p> <p>1. 승객</p> <p>가. <u>만 12세</u> 초과인 경우: 1명</p> <p>나. <u>만 12세</u> 이하인 경우: 0.5명</p> <p>2. (생략)</p>	<p>제5조(승차인원) ----- ----- ----- -----</p> <p>1. ---</p> <p>가. <u>12세</u> -----</p> <p>나. <u>12세</u> -----</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15조(이용제한) ----- ----- ----- -----</p>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u>만 12세</u> 미만의 어린이	4. ----- <u>12세</u>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7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및 <u>만65세이상</u> 의 노인 <단서 삭제 2017.3.7.>	2. ----- ----- <u>65세 이상</u> ----- -----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8조(「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형 및 위촉) ① ~ ④ (생 략)	제7조(전형 및 위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상임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u>만 60세</u> 이하로 한다.	⑤ ----- <u>60세</u> -----.

제9조(「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p>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u>만 18세 이상 만 45세</u> 이하인 사람</p> <p>5. (생략)</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u>18세</u> ---- <u>45세</u> ---- -----</p> <p>5. (현행과 같음)</p>
--	--

제10조(「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 (생략)</p> <p>② “어린이”는 <u>만7세</u>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③ “청소년”은 <u>만13세</u>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④ “성인”은 <u>만19세</u>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p>	<p>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 (현행과 같음)</p> <p>② ----- <u>7세</u> ----- -----.</p> <p>③ ----- <u>13세</u> ----- -----.</p> <p>④ ----- <u>19세</u> ----- -----.</p>

제11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p>	<p>제7조(입장료 면제) ----- -----</p>

현 행	개 정 안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u>만 4세</u> 미만 또는 <u>만 65세</u> 이상인 자 4. ~ 7. (생 략)	----- -. 1. · 2. (현행과 같음) 3. <u>4세</u> ----- <u>65세</u> ----- ----- 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1. ~ 8. (생 략) 9.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u>만65세</u> 이상자에 대한 진료(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10. · 11. (생 략) ② (생 략)	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u>65세</u> ----- ----- ----- ----- 10.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2]

##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 1. 일반요금

구 분	이용료(원)	
	개인	단체(20명 이상)
가. 대인(1명)	15,000	14,000
나. 소인(1명)	11,000	10,000

## ※ 비고

- 위 표에 따른 요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대인 이용료: 13세 이상인 사람
  - 소인 이용료: 13세 미만인 사람. 다만, 보호자가 동반한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 당 영아 1명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 케이블카 이용료는 왕복 이용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이용자가 편도구간만 탑승하였더라도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2. 할인요금

구 분	이용료(원)	
가. 정선군민 및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및 폐광지역·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1) 대인(1명)	10,000원
	2) 소인(1명)	8,000원
나. 장애인(1명)	1) 대인(1명)	10,000원
	2) 소인(1명)	8,000원
다. 국가유공자 등(1명)	10,000원	
라. 65세 이상인 사람(1명)	10,000원	

## ※ 비고

- 위 표 가목에서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이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위 표 나목에서 장애인 할인요금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별표 1 】

입 장 료

구분	어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비고
개인	2,000원	1,500원	1,000원	
단체	1,500원	1,000원	500원	

-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자와 중 · 고등학생증을 소지한자
- . 군인 :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 . 어린이 : 4세 이상 13세 미만자와 유치원생, 초등학생
- . 어른 : 청소년,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자
- .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3-148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공포(’22.12.27.)·시행(’23.6.28.)됨에 따라,
- 나. 우리 군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만’ 으로 규정한 자치법규의 조문에서 ‘만’ 표현 일괄 삭제  
 →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만 ○세’ 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관)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jah1111@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정선군 규칙 제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개정)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19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만 19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2조(「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3항 전단 중 “만 14세”를 “14세”로 한다.

제3조(「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16조제1항제15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u>만 19세 미만</u>의 자를 말한다. 다만, <u>만 19세</u>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u>19세 미만</u> ----- . --- <u>19세</u>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2. (생략)</p> <p>3. <u>만 19세미만</u>의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위반행위는 제외한다)</p> <p>4. <u>만 70세</u> 이상의 자</p> <p>5. ~ 12. (생략)</p>	<p>제3조(감경대상)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19세 미만</u>----- ----- ----- ---</p> <p>4. <u>70세</u> -----</p> <p>5. ~ 12. (현행과 같음)</p>

제2조(「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원가입) ①·② (생략)</p> <p>③ 회원 가입자가 <u>만 14세</u>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p>	<p>제3조(회원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14세</u> -----</p> <p>-----</p> <p>-----.</p> <p>-----</p> <p>-----.</p>

제3조(「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p> <p>1. ~ 14. (생략)</p> <p>15. <u>만 18세</u>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p>	<p>제16조(감면 등) ① -----</p> <p>-----</p> <p>-----.</p> <p>-----</p> <p>-----.</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u>18세</u> -----</p> <p>-----</p> <p>-----</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